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윤 영 창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)으로 정하던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 규정·규칙이 개정('08.7.3)됨에 따라 이를 우리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설정(별표 1)

- 일반직 80%이상, 기능직 18%이내, 별정직·정무직 2%이내

나.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설정(별표 2)

○ 일반직공무원

- 4급이상 7%이내, 5급 21%이내, 6급 34%이내,
7급 35%이내, 8급·9급 3%이상

○ 기능직공무원

- 6급 5%이내, 7급 12%이내, 8급 19%이내, 9급 32%이내,

10급 32%이상

○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- 연구관 15%이내, 연구사 85%이상
- 지도관 26%이내, 지도사 74%이상

○ 소방직공무원

- 소방정이상 1%이내, 소방령 3%이내, 소방경 6%이내,
소방위 8%이내, 소방장 14%이내, 소방교 31%이내,
소방사 37%이상

○ 별정직공무원

- 4급상당 이상 5%이내, 5급상당 20%이내, 6급상당 48%이내
7급상당 15%이내, 8급상당 10%이내, 9급상당 2%이상

다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내용 변경(별표 3)

-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(4급이상)은 조례로 정하고 하위 직은 규칙으로 규정

※ 5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규정

4. 검토의견

행정안전부는 ①지방자치단체 기구·정원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②시·군·구에 대한 시·도의 조직감독권 강화 등을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3일 행정안전부령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)을 개정한 바 있음.

※ 개정요지 붙임 참조

금번 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

가장 핵심적인 개정내용은

첫째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

둘째, 일괄하여 조례로 정하던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 중 4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, 5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(5급 이하는 조례에 총정원만 표시) 이양하는 것임.

이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에 따라 그 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정원 관리와 직급책정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자율성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, 검토결과 이견은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
<붙임자료>

행정안전부 기구정원규정·규칙 개정요지

1. 개정배경

- 지난 5. 1. 자치단체로 하여금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
- 자치단체 스스로의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조직자율성을 대폭 확대

2. 개정요지

□ 기구·정원운영의 탄력성 제고

- 감축을 전제로 실·국 설계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[영]
 - ◆ 국 통합 시 大局(室) 설치 및 3급 담당관 허용, 大局(室)의 활용분야 제한을 폐지
-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채정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 [영·규칙]
- 정원관리방식의 신축성 확대 및 절차 간소화 [영]
 - ◆ 하위직 직급정원을 조례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
 - ◆ 인건비 상승 없는 단순 기구조정 시 입법예고절차 생략

□ 시·군·구에 대한 시·도의 조직감독권 강화

- 한시기구·소속기관 상위직 직급채정 협의권 시·도 이양 [영]
 - ※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 시·도 이양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

□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

- 인구 10만 미만 광역시 자치구 기구 설치기준 보완 [영]
-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비 등 [규칙]